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04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 정춘숙·강선우·김성주

김영진 · 김윤덕 · 김정호

남인순 • 박홍근 • 윤후덕

이정문 · 임종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, 북한,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 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「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접수"를 "모집·접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"를 "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접수절차"를 "모집·접수 절차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기부금품의 <u>접수</u>) ① 재단	제18조(기부금품의 <u>모집·접수</u>)
은 <u>자발적으로</u> 기탁되는 금품	①제7조의 사업을 수행
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	하기 위하여 「기부금품의 모
<u>에서 접수</u> 할 수 있다.	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
	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
	<u>집·접수</u>
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	②
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	<u>모집·접수 절차</u>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